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
----------	----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의자 : 백재현 · 이찬열 · 윤후덕  
박영선 · 문희상 · 안규백  
박남춘 · 박주선 · 원혜영  
위성곤 · 김진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합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청장의 해당 권한이 사

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대·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상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 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다. 현행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
- 라.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 마.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41조 및 제43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상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

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상생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를 “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을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으로, “2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4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에”를 “제20조의3제3항 및 제32조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3조제3항에”를 “제33조제4항에”로, “2년”을 “3년”으로, “1억 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

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7.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대·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상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3(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u></p>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기

#### 제31조(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 ① -----

-----  
-----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

업 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  
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 략)

###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 ② (현행과 같음)

###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기업의

③ · ④ (현행과 같음)

## <작제>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  
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  
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33  
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  
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  
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  
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  
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

⑥ -----제1항에-----  
-----  
-----  
-----.  
-----  
-----  
-----  
-----  
-----.  
-----.

⑦ -----제20조의3제3  
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  
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

## ⑧ (생략)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생략)

〈신 설〉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  
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  
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  
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  
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  
단체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  
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  
정할 수 있다.

<p>② 중소기업청장은 <u>제1항에</u>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할 수 있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u>제2항에</u>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u>&lt;단서 신설&gt;</u></p>	<p>③ ----- <u>제1항 및 제2항에</u>----- ----- ----- -----. ④ ----- <u>제3항에</u>----- ----- ----- -----. 다만, <u>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u> <u>하지 아니하다.</u></p>
<p>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 ③ (생략)</p> <p>④ 중소기업청장은 <u>제33조제3항</u>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p>	<p>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33조제4항</u>----- ----- ----- ----- ----- ----- ----- ----- -----. -----.</p>
<p>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p>	<p>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p>

<p>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 ----- ----- ----- ----- ----- ----- ----- -----.
<p>1. · 2. (생 략) 3. <u>제32조에</u>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p>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0조의3제3항 및 제32조에</u> ----- -----.
<p>4. (생 략) ② · ③ (생 략)</p>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p>제41조(벌칙) ① (생 략) ② <u>제33조제3항에</u>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 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33조제4항에</u> ----- ----- <u>3년</u> --- ----- <u>3억 원</u> ----- -----.
<p>③ (생 략)</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 --- <u>1천만원</u> ----- -----.
<p>1. ~ 4. (생 략) ② · ③ (생 략)</p>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